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도종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775 발의연월일: 2023. 8. 11.

발 의 자:도종환·서동용·김남국

김철민 • 권칠승 • 임호선

유기홍 • 민형배 • 기동민

박 정・안민석・문정복

조승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("학교교권보호위원회")를 두고있으나,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둘 수 있어 사실상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병설이나 사립유치원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있음.

또한 유치원 교원의 경우 분쟁 상황 발생 시 시·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나, 절차상의 어려움과 심의가 아닌 중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.

한편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같은 학교의 교원,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현실임.

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유치원

을 포함한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9조).

법률 제 호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(이하 "학교교권보호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"를 "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80조에 따른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(이하 "교육지원청교권보호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9조(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·운 제19조(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·운 영) ① (생략) 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-----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「제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 권보호위원회(이하 "학교교권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보호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 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교 권보호위원회(이하 "교육지원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 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청교권보호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 <삭 제> 는 사항 ③ (생 략) ③ (현행과 같음)